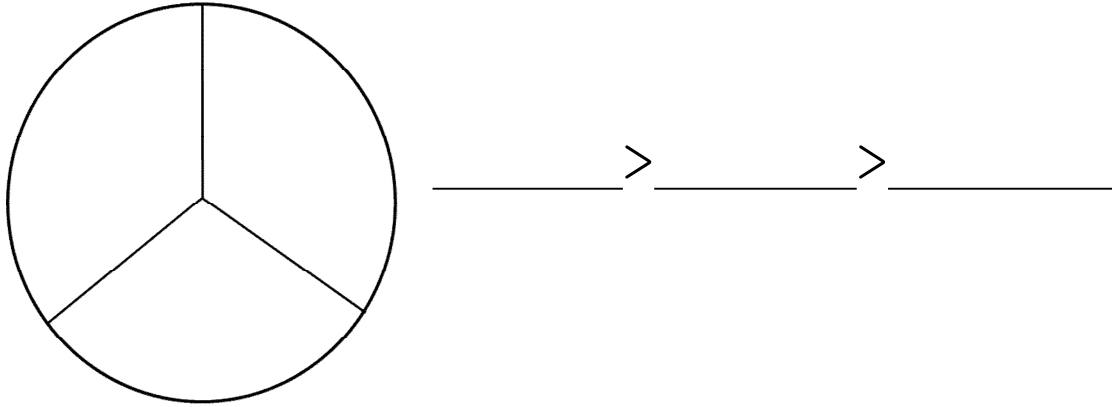


무역계약, 대금결제

하 동 호

caleb.corea@gmail.com

무역계약



1. Vienna Convention(1980)

국가간 무역거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서로 다른 관행과 법률일 것이다. UN총회의 제6차 특별회기에서 평등과 상호이익을 기초로 한 국제거래의 발전이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촉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을 규율하되 상이한 사회적, 경제적 및 법률적 제도를 참작하는 통일규칙을 채택하는 것이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법률적 장벽을 제거하는데 공헌하며 또한 국제거래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는 견지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이 제정되었다.

이 협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법으로써 정식영문명칭은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1980)”이고 약칭하여 CISG(1980)이며 일명 “Vienna Convention(1980)”이라고 한다. 이것은 모든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되는 무역계약의 공통법으로써 UN의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가 1980년에 제정하였으며, 1988년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체약국 간에 발효되어 무역거래에 적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 3월 1일부터 이 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다. Vienna Convention(1980)에는 계약의 성립, 물품매매의 총칙,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위험이전,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대한 공통규정 등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Incoterms는 1953년에 개정된 후, 1967년과 1976년 보완을 거쳐 1980년에 대폭 정비 개정되었고 1990년과 2000년에 보완 개정되었으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최신버전은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Incoterms 2010이다. Incoterms 2010은 중전의 “정형거래 조건에 관한 국제해석규칙”에서 “국내 및 국제무역조건 사용에 관한 ICC규칙”으로 변경하여 국내거래 및 국제거래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 청약과 승낙

(1) 청약(offer)의 개념

Offer란 우리말로 청약(講約)이라고 하며 매매거래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제시하면서 그러한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 또는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이다. 여기서 청약을 행하는 자를 청약자(offeror), 청약을 받는자를 피청약자(offeree)라 한다.

Offer란 피청약자의 무조건·절대적 승낙(unconditional and absolute acceptance)이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 청약자의 피청약자에 대한 일방적·확정적 의사표시이다. 오퍼는 확정적(definite)이라야 하며, 상대방이 승낙(acceptance)할 경우 구속되겠다는 의사표시이다.

오퍼에는 일반적으로 ① 당사자의 표시 ② 오퍼 한다는 문언 ③ 물품의 명세(품명, 규격, 소재, 용도 등), 수량, 가격조건, 선적조건, 대금지결제조건, 포장과 하인표시, 보험조건 등의 매매조건 ④ 발행일자과 번호 ⑤ 유효기간(validity) 등이 기재된다.

오퍼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상대방이 유효기간내에 승낙(acceptance)하면 양 당사자 사이에는 계약이 성립된다.

(2) 승낙(acceptance)의 개념

Acceptance란 우리말로 승낙이라고 하며 승낙은 청약의 내용에 동의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표시이다. Vienna Convention(1980)에서는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피청약자의 진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승낙이 된다. 침묵(silence)이나 또는 어떠한 행위도 취하지 아니하는 것(inactivity) 그 자체로서는 승낙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약(offer)에 대한 상대방(피청약자)의 승낙으로 무역계약(매매계약)이 성립되지만, 승낙의 절차를 별도로 밟지 않고서도 승낙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

(3) 계약의 성립방법

- 1) 승낙 : 청약의 내용에 동의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행위이다.
- 2) 의사실현 : 승낙의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물품인도나 대금지급 등의 계약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매매계약을 성립
- 3) 매매계약서 체결 :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계약 체결

(4) 반대청약

피청약자(offeree)가 청약의 내용의 일부를 변경해서 원래의 청약자(offeror)에게 반대로 청약하는 것을 반대청약(대응청약 : counter offer)이라 한다.

반대청약(counter offer)이 발생하게 되면 원래의 청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원래의 청약자는 offeree가 되고 원래의 피청약자가 offeror가 된다.

※매도인의 offer 양식 : Offer Sheet (물품매도확약서), Proforma Invoice(견적송장)

① EC21 CO., LTD.

11 FLOOR, TRADE TOWER, GANGNAM-GU, SEOUL, 137-070, KOREA
TEL : +82-2-6000-1234 FAX : +82-2-6000-1235

OFFER SHEET

②Messrs.: KOG USA INC.,

③Our Ref. YE01JR231

④Date April 20, 2015

⑤We are pleased to offer you on the following terms and conditions described as follow.

⑥Origin : Republic of Korea

⑦Shipment : Within 30days after receipt of your L/C

⑧Destination : MANILA, PHILIPPINES

⑨Packing : EXPORT STANDARD CARTON PACKING

⑩Payment : by an irrevocable negotiable LC AT SIGHT in our favor

⑪Validity : Oct. 31, 2015

⑫Advising Bank :

⑬Remark :

⑭Unit : CIF MANILA IN USD/YARD

No.	⑮ Commodity & Description	⑯Q'ty	⑰Unit Price	⑱Amount
	65 PERCENT COTTON, 35 PERCENT NYLON RIPSTOP 57INCHES COLOR BREAKDOWN			
	ARMY	17,410	US\$2.65	
	BLACK	3,525	US\$2.65	
	CHINO	11,880	US\$2.65	
	Total	32,815		US\$86,959.75

Yours Very Truly.

⑲Accepted by

⑳

EC21 CO., LTD
Proforma Invoice

Messrs : _____ No. : _____
 Date : _____

We are pleased to make the proforma invoice of the under mentioned articles as per conditions and details described as follows :

HS Code No.	Commodity & Descriptions	Quantity	Unit Price	Amount
Unit : FOB Busan in USD/PC				
Total				

Original : _____
 Packing : _____
 Shipment : _____
 Loading : _____
 Port : _____
 Destination : _____
 Payment : _____
 Insurance : _____
 Inspection : _____
 Remarks : _____

Thanks for your valued order. Please sign this proforma invoice and return into us an acknowledgement by fax.

Accepted by :

Yours faithfully.

3. 주문과 주문승낙

(1) 주문과 주문승낙의 개념

P/O는 Purchase Order의 약어로서 구매청약(buying offer)의 기능과 주문서(order sheet)의 기능이 있다. 청약(請約)은 매도인 뿐 만 아니라 매수인도 할 수 있다. Offer Sheet와 Proforma Invoice가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송하는 청약의 서식이라면 Purchase Order는 그 반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발송하는 청약의 서식이다. 매도인의 청약에 대하여 매수인이 승낙하여도 계약이 성립되고, 그 반대로 매수인의 청약에 대하여 매도인이 승낙을 하여도 계약은 성립된다.

(2) 매수인의 P/O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P/O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이전에 거래관계가 전혀 없던 매수인이 매도인의 offer 정보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자신이 희망하는 거래조건으로 매도인에게 P/O를 보내오거나 또는 이전에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기존 거래조건을 기준으로 매도인에게 보내오는 경우가 첫 번째이다. 이런 경우의 P/O는 구매청약(buying offer)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매도인은 거절을 할 수도, 침묵을 할 수도, 반대청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P/O에 대하여 주문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다. 만약 매도인이 매수인의 P/O를 승낙해 주었다면 매매계약은 성립된다.

두 번째는 매도인으로부터 Offer Sheet를 받은 후 Purchase Order를 보내오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의 P/O는 주문서(order sheet)이다. 이 경우에는 양당사자가 이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매도인의 별도의 승낙이 없더라도 계약은 이미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낙의 과정을 통해서 주문서를 확인해 주는 것이 안전하다. 가끔씩 이런 과정을 생략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주문서를 승낙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다른 거래선을 찾는 경우도 있다.

CALICO Fashion Ltd.

463 seventh avenue, 5th floor
New York, NY
Tel : Fax :
www.johnfashion.com

PURCHASE ORDER

Messrs.
EC21 Co., Ltd.
11F, Trade Tower, Samsung-dong,
Gangnam-Gu, Seoul, Korea

P/O Number. : YU076SE
Date : Apr. 10, 2014

Description	Ladies 100 pct Polyester Knit Jacket, CAT. 635, HTSUS NO. 6102.30.2010 Style no.15189M
Quality	As per the sample no.JH102
Packing	Hanging container
Quantity	2,500pcs
Unit Price	US41.50
Amount	USD103,750.00
Price	FOB Busan Korea in USD/PC
Loading Port	Busan, Korea
Discharge	New York, USA
Insurance	Covered by Buyer
Payment	By an irrevocable at sight Negotiation L/C in favor of JUNGHYUN KOREA CO., LTD.
Shipment	05/25/14

Authorized by David Hirsch/President

4.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수출상인 매도인과 수입상인 매수인사이에 물품의 매매이행에 앞서 기본적으로 매매의 기본이 되는 조건들을 합의하여 문서로 작성해 두어야 후일에 발행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무역의 기본조건이 명시된 문서를 일반거래조건협정서(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라고 한다. 이 협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조건들을 포함하고 있다.

범 주	구체적인 계약사항	
기 본 사 항	- 당사자(Principal) - 계약 확정문언	- 계약 체결일 - 계약 유효기간
상품자체사항	- 품질조건(Terms of Quality) - 수량조건(Terms of Quantity) - 가격조건(Terms of Price) - 포장조건(Terms of Packing)	
계약이행사항	- 선적조건(Terms of Shipment) - 결제조건(Terms of Payment) - 보험조건(Terms of Insurance)	
계약 불이행사항	-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 - 클레임조항(Claim Clause) -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	
정형거래조건 등	-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 준거법(Governing Laws)	

※ 무역계약의 5대 기본조건

- ① 품질조건(terms of quality)
- ② 수량조건(terms of quantity)
- ③ 가격조건(terms of price)
- ④ 선적조건(terms of shipment)
- ⑤ 결제조건(terms of payment)

※ 무역계약의 7대 기본조건:

5대 기본조건 + 포장조건(terms of packing), 보험조건(terms of insurance)

Incoterms 2010 요약

E Group	<p>EXW(EX Works, 공장인도조건) :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작업장, 공장, 창고, 농장, 판매장 등)에서 물품을 인도하며, 매도인은 물품을 매수인의 집화용 차량(collecting vehicle)에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인도한다.</p>
F Group	<p>FCA(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2가지 인도조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carrier)에게 인도되는 시점에서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에게 넘어간다.</p> <p>① Seller의 영업장 인도 : 매도인은 운송인의 운송수단에 적재해서 인도 ② 기타장소 인도 : 그 인도장소까지 물품을 운반한 매도인측의 차량에서부터 양화(unloading)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인에게 인도</p>
	<p>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 선적항 본선 선측에서 물품 인도</p>
	<p>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 본선에서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에게 넘어간다.</p>
C Group	<p>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조건) : 목적항까지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매도인의 위험 부담은 본선에서 매수인에게 넘어간다.</p>
	<p>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및 보험료 포함조건) : 목적항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매도인의 위험부담은 본선에서 매수인에게 넘어간다.</p>
	<p>CPT(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조건) :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된 때에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이전된다. 그러나 매도인은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모든 운송비를 부담해야 한다.</p>
	<p>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인도조건) : 운송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적하보험에 부보할 의무를 진다는 것 이외에는 CPT조건과 동일하다.</p>
D Group	<p>DAT(Delivered At Terminal, 도착터미널인도조건) : 계약물품을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 즉, 부두(quay), 창고(warehouse), container yard 혹은 도로(road), 철도(rail) or 공항터미널(air cargo terminal)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수입통관 의무는 매수인의 의무</p>
	<p>DAP(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조건) : 매도인은 수입통관비를 지급하지 않고 매수인의 지정된 장소까지 인도</p>
	<p>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 매도인은 수입통관비를 지급하고 매수인의 지정된 장소까지 인도. DDP는 EXW와 정반대되는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많은 조건이라 할 수 있다.</p>

대금결제

1. 무역결제방식

(1) 무역결제 방식의 의의

무역결제방식에는 크게 송금(T/T : Telegraphic Transfer), 추심(Collection), 신용장(L/C : Letter of Credit)결제방식으로 구분된다.

(2) 무역결제 방식

결제방식	시기	영문명칭	명칭
송금 T/T	CWO	<u>C</u> ash <u>W</u> ith <u>O</u> rd <u>e</u> r	사전송금
	COD	<u>C</u> ash <u>O</u> n <u>D</u> eliver <u>y</u>	상품인도
	CAD	<u>C</u> ash <u>A</u> gainst <u>D</u> oc <u>u</u> ment	서류인도
	O/A	<u>O</u> pen <u>A</u> ccount	건별외상
추심 Collectio n	D/P	<u>D</u> oc <u>u</u> ments <u>A</u> gainst <u>P</u> ayment	지급인도
	D/A	<u>D</u> oc <u>u</u> ments <u>A</u> gainst <u>A</u> cc <u>e</u> ptance	인수인도
신용장 L/C	Sight	At Sight	일람지급
	Usance	At ×× days after Sight	연지급

(3) 결제방식별 비교

결제방식	내용
송금 결제방식 (T/T)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직접 발송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직접 대금 청구 수입상이 약속한 날에 대금 송금 환어음(Bill of Exchange)이 발행되지 않는 거래 당사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래 은행이 대금청구 및 결제에 개입하지 않는 거래
추심 결제방식 (Collection)	수출상 → 거래은행(추심의뢰은행) → 추심은행(수입상 측) → 수입상에게 대금 청구 → 추심의뢰은행으로 결제
신용장 결제방식 (L/C)	수출상 → 지정은행(매입은행) nego → 개설은행(수입상 측) → 매입은행으로 직접 결제

※ 환어음

어음에는 크게 약속어음과 환어음 두 가지가 있다. 국내거래에서 사용하는 어음은 약속어음(Promissory Note : P/N) 이라고 하며 약속어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을 일정기간에 지급하겠다는 증서이다.

반면, 환어음(Bill of Exchange : B/E 혹은 Draft)은 무역거래에서 사용하는 증서로써 무역거래에서 대금을 지급받는 수출상이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대금지급 청구서이며 대금지급 지시서이다.

Drawee : 수출상이 발행하는 환어음의 대금을 지급하는 자이며 신용장 방식에서 drawee는 개설은행 혹은 개설은행이 권한을 준 제3의 은행이 될 수 있다. 반면, 추심결제방식에서 drawee는 수입상이 된다.

※ 환어음 서식 예

(1) NO. 123456 (2) **BILL OF EXCHANGE** (3) APR. 1, 2015 SEOUL, KOREA

(4) FOR US \$28,836.25

(5) AT xxxx SIGHT OF **FIRST BILL OF EXCHANGE** (SECOND OF THE SAME TENOR AND DATE BEING UNPAID) PAY TO (6) KOREA EXCHANGE BANK OR ORDER THE SUM OF

(7) SAY US TWENTY EIGHT THOUSAND EIGHT HUNDRED THIRTY SIX DOLLARS TWENTY FIVE CENT ONLY

(8) VALUE RECEIVED AND CHARGE THE SAME TO ACCOUNT OF Kalmax Garments FTY.LTD

(9) DRAWN UNDER HSBC BANK HONG KONG

(10) L/C NO. MGK248186 (11) DATED 2014/03/20

(12) TO HSBC BANK HONG KONG MONGKOK OFFICE

(13) EC21 CO., LTD.

- (1)어음번호 (2)발행일 (3)발행지 (4)금액 (5)지급만기일 (6)수취인
 (7)문자금액 (8)개설의뢰인 (9)개설은행 (10)신용장번호
 (11)신용장발행일자 (12)지급인과 지급 (13)발행인의 기명날인

2. 송금결제방식

(1) 송금결제 방식의 의의

송금방식이란 무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출상이 선적한 후 별도의 대금청구 절차를 취하지 않더라도 계약당시 합의한 때가되면 수입상이 자발적으로 물품대금을 수출상에게 보내주는 방식의 무역거래를 의미한다.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는 시기에 따라 계약체결 후 물품 선적 전에 지급하는 선수금방식, 물품의 인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상품인도방식, 서류인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서류인도방식, 물품 선적 혹은 수령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지급되는 외상방식으로 크게 4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송금결제방식의 특징

1. 규제하는 국제규칙이 없다.
2. 대금결제와 선적서류의 인수도가 완전히 분리된 거래이다.
3. 송금의 시기여하에 따라 위험부담자가 달라진다.
4. 은행이 개입하지 않는다.
5. 외상대금을 수입상이 결제하지 않아도 은행에 소문이 나지 않는다.

(2) 대금결제 시기에 의한 구분

1) 사전송금방식(Advance Payment)

사전송금방식은 수출상의 제품 선적 전(before shipment)에 수입상이 무역대금 일부 혹은 전액을 수출상에게 미리 송금하여 지급하고 수출상은 계약서의 약정기일 이내에 계약상품을 선적하는 방식이다.

사전송금방식을 단순송금방식(Advance Payment), 선지급방식(Payment in Advance or Cash in Advance), 'CWO(Cash With Order)' 또는 'T/T in Advance', 'Prior to Ship'이라고도 한다. 수출상의 입장에서 대금을 미리 받는 방법이므로 가장 좋은 대금회수 방식이다.

이 방식은 수출상에게 더할 나위 없이 유리한 결제방식이다. 대금부터 미리 받고 상품을 만들어 선적하는 것이니 아무런 걱정이 없다. 그런데 수입상은 어떠한가? 상품을 받기도 전에 대금부터 미리 지불했으니 계약상품이 도착할 때까지 안심할 수가 없다. 만약 수입상의 입장에서 이 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선지급한 대금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다면 대금을 선지급하기 전에 수출상으로부터 수출상 거래은행의 선수금환급보증서(Advance Payment bond)를 받은 후 대금을 선지급하면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다.

2) 동시지급송금방식(Concurrent Payment)

① 상품인도결제방식(COD : Cash On Delivery)

수출상이 선적을 한 뒤 선적서류를 수입지에 있는 자신의 대리인에게 송부하여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입상이 검사 후에 상품을 인도받으면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② 서류상환결제방식(CAD : Cash Against Documents)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수입업자의 지사나 대리인(주로 수출상의 국가에 소재함)에게 제시하거나 또는 해외의 수입상에게 직접 서류를 송부하여, 당해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3) 사후송금방식(Later remittance after shipment)

① O/A(Open Account)

O/A는 사전송금방식(사전송금방식)과는 정반대로 매매계약에 의하여 수출상이 먼저 물품을 선적한 후에 선적서류 원본을 수입상에게 직접 송부하면, 수입상은 물품매매계약서의 송금조건에 따라 선적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거래 건별로 수출상이 지정한 은행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Open Account는 “선적통지 조건부 사후송금 결제방식”이라고 하며 수출업체가 수출 물품 선적을 완료하고 수입상에게 선적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채권이 발생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O/A는 선적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대금을 송금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예를 들어 수출상과 수입상이 90일 T/T 외상거래를 합의 했을 때, ‘O/A 90days’라고 합의하였다면 이는 수출상이 제품을 선적하고 선적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수입상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O/A 90days’ 조건을 ‘Net 90days’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이는 순수한 90일 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대금지급을 물품 도착일이 아닌 선적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이다. 수출상 입장에서 순수한 90일 외상이란 물품 도착 후가 아닌 선적 후 일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O/A 90days’, ‘Net 90days’, ‘T/T within 90days after shipment date’는 대금지급시기 측면에서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3. 추심결제방식(Documentary Collection)

(1) 추심결제방식의 개념

추심결제방식(推尋決濟方式)이란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물품을 선적한 후에 수입상이 요구하는 선적서류를 수출상의 은행(추심의뢰은행 : remitting bank)을 통하여 수입상이 지정하는 은행(추심은행 : collecting bank)으로 송부하고, 수입상의 은행(추심은행)이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여 수출지의 은행(추심의뢰은행)으로 보내주는 거래이다. 송금결제방식에서 선적서류를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직송하고 수출대금은 수입상이 자발적으로 은행에서 송금하는 것이며, 신용장방식에서 수출국 은행이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으로 송부하면 은행이 직접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비교될 수 있다.

추심결제방식에는 대금지급 시기에 따라서 D/P와 D/A가 있으며 이 방식의 거래를 규제하는 국제규범이 있기 때문에 매매당사자는 이 규범에 맞추어 거래를 하여야 하며 마음대로 거래내용을 변경시킬 수가 없다.

추심결제는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화환어음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llection of the Commercial Paper)”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시켜야 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제정되어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3차 개정추심

에 관한 통일규칙 1995년 개정판이 ICC 간행물 번호 제522호인데 'URC 522'로 통용되고 있다.

※추심결제방식의 특징

1. 은행을 통한 선적서류의 송부
2. 은행을 통한 대금의 추심
3. 어음부 거래

(2) 추심결제방식의 종류

1) 지급인도조건(D/P : Documents against Payment)

① 지급인도조건의 개념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일람지급 환어음을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발행하여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에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의뢰은행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상의 거래은행(추심은행)으로 보내 추심을 의뢰하고, 추심은행(collecting bank)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서류를 인도하고 지급 받은 대금은 추심을 의뢰하여온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식이다.

D/P 거래절차

- (1) 수출상과 수입상이 D/P조건으로 매매계약체결
- (2)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제품선적
- (3) 수출상이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으로 추심의뢰
- (4)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이 추심은행(collecting bank)으로 추심지시
- (5) 추심은행(collecting bank)이 수입상에게 추심실행
- (6) 수입상이 추심은행(collecting bank)으로 대금결제
- (7) 추심은행(collecting bank)이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으로 대금 송금
- (8)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이 수출상에게 대금지급

2) 인수인도조건(D/A :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① 인수인도조건의 개념

D/A는 O/A거래와 동일하게 은행의 지급확약이 없는 외상거래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두 거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O/A는 선적 후 수출업자가 선적서류를 수입업자에게 직접 송부하여 대금을 청구하지만 D/A는 선적 후 은행을 통해 대금을 회수한다. 즉, 은행이 수입상에게 대금을 청구하여 만기에 그 대금을 받아 주는 거래이다.

D/A를 D/P와 비교하면 D/A는 O/A처럼 때에 따라서 대금회수 및 물품회수가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연지급 환어음을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발행하여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에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의뢰은행

(remitting bank)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상이 지정한 추심은행(collecting bank)으로 보내면서 추심을 지시하고, 추심은행(collecting bank)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으로부터 어음의 인수(acceptance)를 받으면서 서류를 인도(release or delivery)하고 그 어음의 만기일에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아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때 추심은행은 수입상으로부터 어음의 인수를 받으면서 곧바로 추심(collection)을 의뢰하여 온 수출국의 추심의뢰은행으로 수입상이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인수했다는 사실을 통보하게 되는데 이것을 '인수통보'라고 하며 실무현장에서는 'A/A'라고 한다. 'A/A'란 'Advise of Acceptance' 혹은 'Acceptance Advise'라는 의미이다. 추심결제방식에서 인수는 수입상이 하고 인수통보는 추심은행이 한다. 그러나 신용장 결제방식에서는 은행이 인수하고 역시 은행이 인수통보를 한다. 이것이 두 결제방식에서의 인수 및 인수통보의 차이점이다.

D/A 거래절차

- (1) 수출상과 수입상이 D/P조건으로 매매계약체결
- (2)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제품선적
- (3) 수출상이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으로 추심의뢰
- (4)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이 추심은행(collecting bank)으로 추심지시
- (5) 수입상이 추심은행(collecting bank)에 방문하여 인수(대금지급약속) 의사표시
- (6) 추심은행(collecting bank)이 수입상에게 선적서류 인도
- (7) 추심은행(collecting bank)이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에게 인수통보
- (8) 수입상이 만기에 추심은행(collecting bank)으로 대금 결제
- (9) 추심은행(collecting bank)이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으로 대금 송금
- (10)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이 수출상에게 대금지급

신용장

1. 신용장(Letter of Credit)

(1) 신용장의 개념

신용장(Letter of Credit)이란 '개설은행의 조건부지급확약서(conditional bank undertaking of payment)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조건(terms and conditions)이 이루어진다면 지급을 확실히 약속하고 그 반대로 그러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쓴 약속의 증서로서 그 조건이란 선적한 물품과 관계없이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면 지급(payment)하겠다는 뜻이므로 수익자(beneficiary)는 선적서류를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신용장 거래에서 수익자(beneficiary)인 수출상은 당연히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선적하여야 하겠지만 대금을 확실히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및 국제표준은행관행(ISBP 745)에 맞추어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익자가 안전하게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신용장의 제반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것이다. 이것은 신용장을 약의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려는 몇몇 개설의뢰인의 의도를 사전에 막는 방법이 될 것이다.

신용장거래시 서류상의 사소한 하자를 이유로 unpaid를 하는 경우는 약의적으로 가격을 인하해 보려는 의도와 현지시황의 악화로 인한 'market claim'인 경우가 많다. 'Market claim'이란 품질불량이나 선적지연 등의 정상적인 클레임이 아닌 수입국의 시황 악화로 인한 고의적인 클레임이다. 시황악화로 판매가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지는 경우 개설의뢰인이 자신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서류상의 사소한 하자를 이유로 unpaid를 하는 것이다. 이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길은 수시로 현지 시장상황을 monitoring 하여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거나 신용장관련 국제규칙에 따라서 서류를 완벽하게 작성하는 길 뿐이다.

※ 일치(Complying)의 의미

여기에서 일치한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 ① 서류의 종류
 - ② 서류의 통수
 - ③ 원본과 사본의 구분
 - ④ 서류작성요령이 UCP 600 및 ISBP 745에 의거하여 작성
 - ⑤ 선적기일(S/D : Shipping Date) 및 유효기일(E/D : Expiry Date) 준수
 - ⑥ 서류제시기일(P/D:Presentation Date)을 요구하는 경우 서류제시기일 준수
 - ⑦ 서명과 일자를 요구하는 경우 서명과 일자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말한다.
- * 물품을 실제로 선적했는지의 여부 및 물품의 하자여부는 따지지 않음
(개설은행이 명백한 사기의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 * 일치의 반대말은 불일치(discrepancy)

신용장(Letter of Credit)이란 무역거래에 따른 대금지급 및 상품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입상을 신용장 개설의뢰인(applicant)으로 하고 수출상을 수익자(beneficiary)로 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인 신용장 개설은행(issuing bank)이 수입상의 요청(request)으로 수출상(exporter) 또는 서류매입은행(negotiating bank) 및 선의의 어음소지인(bona fide holders)에게 대금지급을 약속하는 서장(書狀)이다.

(2) 신용장관련 국제규칙

1)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신용장 통일규칙이란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의 약어로써, 1933년에 국제상업회의소(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제정하였다. 지금까지 총 6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최신 version은 2007년 개정된 국제상업회의소 간행물 제600호이며 정식명칭은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600(UCP 600)”이다.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은 신용장의 문면에 위 규칙을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모든 화환신용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신용장에서 명시적으로 수정되거나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한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

2) 국제표준은행관행(ISBP 745)

국제상업회의소(ICC) 은행위원회는 2002년 10월 30일 새로 제정된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국제표준은행관행)”를 승인하였고 2013년 4월 17일 ‘ISBP745’를 승인하였다. ‘ISBP745’는 세 번째 버전으로 신용장통일규칙(UCP 600)하에서 서류심사시 적용되어야 할 국제표준은행관행에 관하여 해설한 책자이며 실무지침서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The ISBP is a particular complement to UCP(UCP의 특별보록)
- ② UCP의 규칙들을 실무에서 적용하는 기준을 정한 것
- ③ ISBP의 제정목적은 서류 심사의 기준을 전 세계적으로 통일하여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것
- ④ UCP에서 서류는 ISBP에 따라 심사되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으므로 UCP를 적용하는 신용장에는 ISBP를 적용한다는 문언을 추가할 필요가 없음
- ⑤ 모든 관행을 정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실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관행들을 298개의 조항으로 선정하여 문서화하였음

‘ISBP 745’은 사소한 하자는 서류상의 불일치로 보지 말자는 취지이며 이것이 탄생한 이후부터 개설은행과 매입은행간의 서류상의 분쟁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고 신용장을 취급하는 관련 당사자들이 이것이 탄생하기 전 보다 훨씬 더 용이하게 신용장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ISBP(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의 의미

- ▶ Issuing bank : 선적서류 심사 지침서의 역할을 한다.
- ▶ Beneficiary : 선적서류 작성 지침서의 역할을 한다.

(3) 신용장의 특성

1) 독립성의 원칙(Principle of Independence)

UCP 600 제4조에서 신용장은 그 성질상 그것이 매매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따라 근거를 두고 발행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와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이며, 신용장에 그러한 계약에 관한 어떠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계약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으며 또한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신용장에 의하여 지급이행하거나, 매입하거나 또는 기타 모든 의무를 이행한다는 은행의 약속은 개설은행 또는 수익자와 개설의뢰인과의 관계로부터 생긴 개설의뢰인에 의한 클레임 또는 항변에 지배받지 아니한다. 이러한 수출상과 수입상간의 매매계약(contract for sale)과 무관한 거래원칙을 신용장거래의 독립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따라서 신용장 문면에 만일 물품의 명세(description)가 “as per sales note no... dated...” 등과 같이 매매계약서의 일자나 번호가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은행은 실질적인 조사 의무는 없으며 제시된 서류의 문면에 이런 문언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언을 기재하면 된다.

신용장거래는 매매계약서와는 아무 관계가 없으므로 신용장 본문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만약 매매계약서와 다른 물품이 선적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유로 개설은행이 한번 지급(payment)하였던 대금을 다시 돌려 달라고 할 수 없으며, 그 문제는 개설의뢰인(applicant)과 수익자(beneficiary) 사이에 매매계약서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신용장방식에 의한 대금지급은 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 매매계약과 상이한 물품이 선적된 문제로 인하여 대금지급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신용장거래에 이러한 특성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당사자들이 지니는 별개의 성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신용장 매입은행은 매매계약이나 기타의 계약내용에 관계없이 단지 신용장 상에 명시된 조건과 신용장통일규칙에서 규정한 내용에만 충실하게 맞추어서 이행하여 수출상이 제시하는 선적서류의 매입을 하게 된다. 수출상에게 미리 지급한 수출대금은 개설은행 등이 수출상이 매매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이다.

둘째,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이 선적서류 매입 후 송부한 선적서류에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 불일치 등 외관상의 하자가 없는 이상 비록 매매계약서나 기타 계약내용과 불일치한 불량상품의 송달 등 수출상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수입상이 대금지급을 거절하라고 요청하더라도 이 요구에 응하지 못하게 된다.

셋째, 신용장 상에 표명된 조건의 변경은 신용장 관계당사자 전원(수익자, 개설은행, 확인신용장의 경우 확인은행)의 일치된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관계당사자의 전원합의가 없다면 신용장상의 글자 하나라도 변경할 수 없게 된다.

2) 추상성의 원칙(Principle of Abstraction)

UCP 600 제5조에서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은 서류에 의해 거래를 하는 것(deal with documents)이지 그 서류와 관련된 상품, 용역 또는 기타 계약이행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품에 관한 문제는 수출입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든지 혹은 수입상이 별도의 클레임(claim)을 제기하여 상사분쟁조정에 의해 해결하여야 한다. 서류에 의한 신용장의 거래관행을 신용장의 추상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신용장거래의 판단은 오직 제시되었던 서류만을 가지고 결정하여야 한다. 즉, 실질적

인 거래의 상태와 상품은 서류로서 추상화되어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 신용장거래인 것이다. 만약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표시되었다면 그러한 주장은 서류만에 기초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설은행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그 서류의 문면상 일치성에 의한 서류수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3) 신용장거래의 한계성(Limitation)

서류에 의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위의 두 가지 특성은 대금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기는 하나 실물거래인 무역거래를 완벽하게 보장할 수는 없는 한계성을 동시에 지니게 된다. 즉, 수입상의 입장에서 신용장이 물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는 없으며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물품을 공급하였더라도 서류상의 하자로 인한 대금결제의 지연 또는 지급 거절을 방지할 수는 없다.

※ 신용장 거래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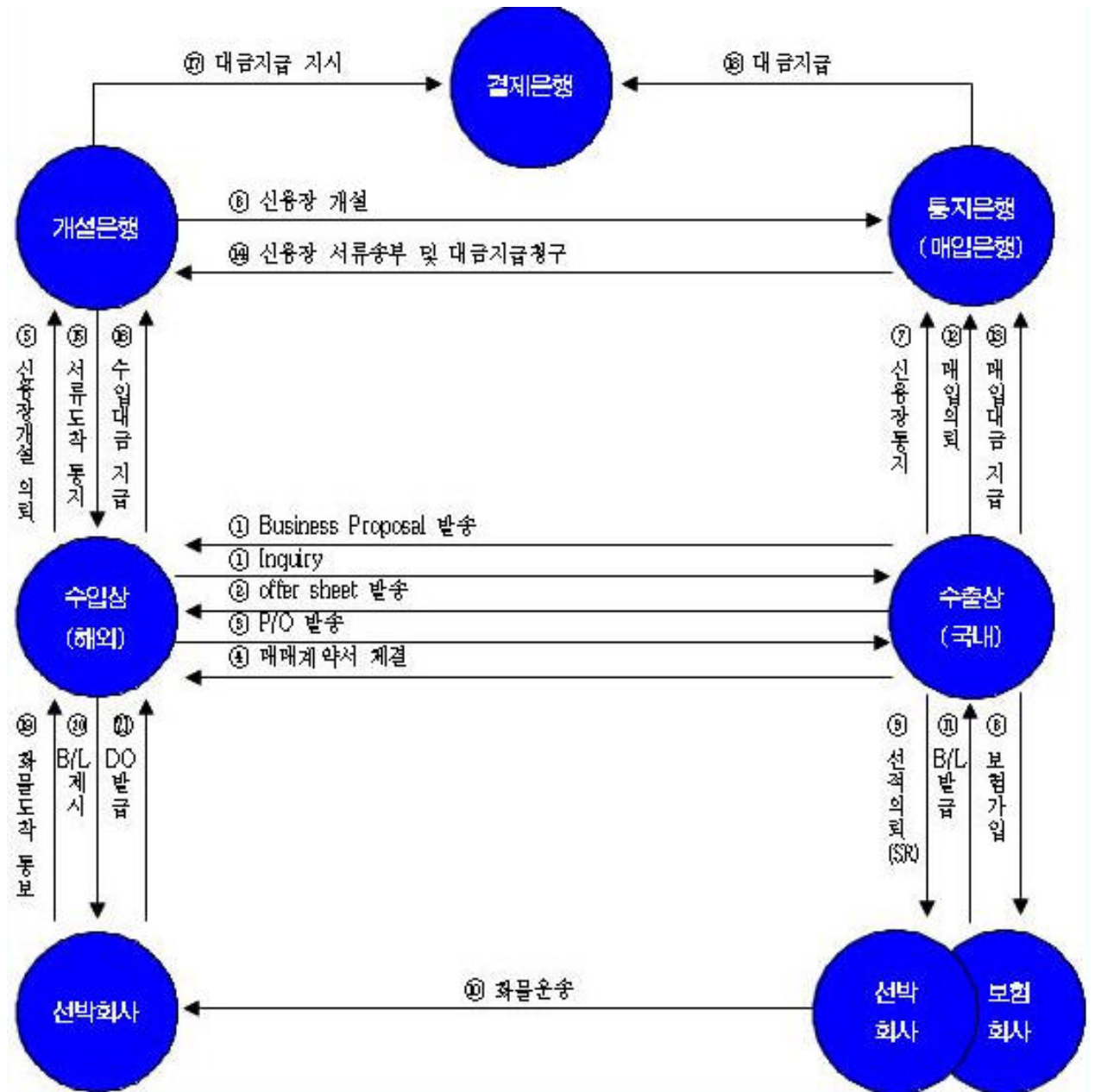
(1) Beneficiary(수출상)

- ① UCP, ISBP에 따른 정확한 서류작성
- ② 신용도 높은 수입상과 거래(수입유통 경력이 최소 3년 이상 회사)
- ③ 신용도 높은 개설은행의 신용장 유도

(2) Applicant(수입상)

- ① 신용도 높은 수출상과 거래(제품 수출경력이 최소 3년 이상 회사)
- ② PSI(Pre Shipment Inspection) : 선적 전 검사를 철저히 실시
- ③ I/C(Inspection Certificate) : 검사대행기관이 발행한 I/C 첨부토록 신용장조항에 삽입
- ④ Warranty bond(하자보증서) : 일정금액에 대한 하자보증서 제시 요구

2. 신용장의 전개과정



※ 가격조건 CIF, 결제조건은 Sight L/C에 의한 해상운송 수출입 절차

3. 신용장의 관계당사자

신용장거래에 관계되는 자를 관계당사자(parties concerned with L/C)라고 하며 여러 당사자 중 신용장 개설의뢰인(applicant), 개설은행(issuing bank) 그리고 수익자(beneficiary)를 신용장 거래의 주요 당사자(main parties concerned)라고 한다.

(1) 개설의뢰인(Applicant)

개설의뢰인은 자기의 거래은행인 개설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수입상(importer)으로서 상품의 매수인(buyer), 환어음의 최종결제인(간접 drawee), 대금결제인(accountee, payer)이자 물품의 수하인(consignee)이다.

(2) 개설은행(Issuing Bank)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수출상(beneficiary) 앞으로 자신의 서장(書狀)을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또는 그 자신을 위하여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을 말한다.

(3) 통지은행(Advising Bank)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통지하는 은행을 말한다. 신용장의 개설은행은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개설한 신용장을 수익자의 소재지에 있는 자기의 본·지점 또는 환거래은행(correspondent bank)을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는데,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수익자인 수출상에게 신용장 도착을 통지하는 은행으로서 신용장의 진정성(authenticity ; 진위)을 확인하여야 한다(UCP 600 제9조 b).

- Advising bank
- Notifying bank
- Transmitting bank

(4) 수익자(Beneficiary)

수익자란 그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신용장을 개설 받는 당사자를 말하며 개설은행으로부터 개설된 신용장을 통지은행으로부터 수취하여 이에 요구된 모든 조건을 일치시키는 서류를 제시함으로써 대금의 결제를 받아 이익을 얻는 수출상(exporter)으로서 상품의 매도인(seller), 환어음 발행인(drawer), 대금수령인(payee)이자 물품의 송하인(consignor, shipper)이다.

(5)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매입(Negotiation)이라 함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 또는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일람 출급 또는 기한부) 환어음이 제시될 때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기 전에 미리 선지급하거나 또는 선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최종 지급일까지의 이자 및 수수료를 공제하고 할인하여 매수(purchase)하는 선적 후 금융을 행하는 것이다. 수익자를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은행을 매입은행이라고 하며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이 될 수 없다.

- Negotiating bank(매입은행)
- Discounting bank(할인은행)
- Purchasing bank(매수은행)

(6) 확인은행(Confirming Bank) : 확인신용장일 경우

신용장에서 확인(confirmation)이란 개설은행이 지급 또는 인수를 약속한 취소불능신용장에 대하여 개설은행으로부터 수권되었거나 요청받은 타은행이 수익자에게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약속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약속을 해주는 은행을 확인은행이라고 한다. 대개 통지은행이 동시에 확인은행의 역할을 한다.

(7) 지급은행(Paying Bank)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될 때 또는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이 자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제시될 때 지급을 이행하는 은행이며 신용장의 개설은행은 항상 지급은행이 된다. 타은행이 지급은행이 되기 위해서는 개설은행과 환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자행에 개설은행 명의의 예금계좌를 설치하여 두고 개설은행의 예금계좌에서 차감하면서 지급을 이행한다.

지급이행(Honour)은 다음과 같이 지급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a. to pay at sight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sight payment.

신용장이 일람지급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일람 후 지급하는 것

b. to incur a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and pay at maturity if the credit is available be deferred payment.

신용장이 연지급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연지급확약의무를 부담하고 만기일에 지급하는 것

c. to accept a bill of exchange("draft") drawn by the beneficiary and pay at maturity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acceptance.

신용장이 인수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수익자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을 인수하고 만기일에 지급하는 것

무역거래별 당사자 명칭

거래내용	수출상		수입상	
매매관계	Seller	매도인	Buyer	매수인
무역관계	Exporter	수출상	Importer	수입상
신용장관계	Beneficiary	수익자	Applicant	개설의뢰인
환어음관계	Drawer	발행인	Drawee	지급인
운송관계	Consignor	선적인	Consignee	수하인
	Shipper			
계정관계	Accounter	대금수령인	Accountee	대금결제인

4. 신용장의 분류

(1) 대금지급 시기에 의한 분류

1) 일람출급신용장(sight credit)

- ① 수익자가 발행한 일람출급환어음 혹은 선적서류에 대하여 신용장의 지시에 따라 제시 되었을 때 즉시 지급되는 신용장이다. 이때 '즉시'라는 의미는 서류 제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최장 제5영업일 이내이며 서류에 하자가 없다면 지급(payment)하고 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지급거절(unpaid)통보를 한다. 이때 개설은행은 서류의 하자사항에 대한 통보를 매입은행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을 "Notice of discrepancy"라고 한다.
- ② 일람지급으로 이용 가능한 신용장은 지급신용장(Payment credit)과 매입신용장(Negotiation sight credit)이다.
- ③ 신용장 표기(42C Draft at :)
 - 가. 일람출급 매입신용장 : At sight
 - 나. 지급신용장 : 환어음에 대한 언급 없이 41A : by Payment

※ Sight L/C : 선적서류 제시 → 은행의 서류심사 → 즉시 지급(payment)

2)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

- ①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환어음의 지급조건이 기한부환어음(usance draft)을 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익자가 선적서류와 함께 기한부환어음(매입신용장, 인수신용장)을 제시하면 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 이 환어음을 즉시 인수(acceptance)하고 그 만기일(at maturity)에 지급(payment)한다고 약정된 신용장이다. 환어음의 제시를 요구하지 않는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Credit)의 경우 연지급확약서를 발행하고 만기에 대금을 지급한다.
제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일람출급방식에서는 지급거절이라 하며 기한부에서는 인수거절이라고 한다.
- ② 기한부로 이용 가능한 신용장은 매입신용장(Negotiation Usance Credit), 인수신용장(Acceptance Credit),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Credit)이다.
- ③ 신용장 표기(42C Draft at :)
 - 가. 기한부 매입신용장 : by negotiation
(at ××days after sight or at ××days after B/L date)
 - 나. 인수신용장 : by acceptance (at ××days after sight)
 - 나. 연지급신용장 : 환어음에 대한 언급 없이 by deferred payment
(at ××days after sight)

※ Usance L/C : 선적서류의 서류제시 → 은행의 서류심사 → 매입신용장의 경우 개설은행, 인수신용장의 경우 인수은행의 인수통보(A/A : Acceptance Advise), 연지급신용장의 경우 연지급은행의 연지급확약서 발행 → 만기에 지급(payment)

대금지급시기에 따른 분류

구분	Sight(일람출급)	Usance(기한부)
명칭	일람출급(일람지급, 일람불)	기한부(연지급, 후지급)
지급시기	즉시 지급(payment)	즉시 인수(acceptance)
	즉시는 5영업일 이내	인수통보 후 만기 지급
서류 불일치시 개설은행 조치	지급거절	인수거절
	Refusal of payment	Refusal of acceptance
환가료 명칭	Periodic interest	Periodic interest
환가료 일수	8일치(서류발송 → 영수)	8일 + usance기간

Sight와 Usance의 비교

Sight(일람출급)	Usance(기한부)
서류 일람 후 즉시지급	서류 일람 후 즉시인수
서류접수 다음날로부터 늦어도 제5영업일 이내 지급	서류접수 다음날로부터 늦어도 제5영업일 이내 인수
일람(sight)후 → 즉시지급(payment)	일람(sight)후 → 인수통보(A/A ; Acceptance Advise) → 만기지급(payment)
At (once after) sight의 의미	At (××days after) sight or B/L date
42C draft at : at sight	42C draft at : at (××days after) sight or B/L date

결제시기 비교

결제방법	선수금	동시지급	외상
T/T	CWO	COD	O/A
		CAD	
Collection		D/P	D/A
L/C		At sight	Usance

대금결제 방식의 비교

결제방식	수출상의 입장	대응방안	수입상의 입장	대응방안
CWO	위험부담 없음		신용상태에 따라 대금회수와 상품 인수가 불가능	선수금 환급보증서 (A/P Bond)를 송금 전에 요청, 수입보험 가입
COD	수출대금 영수가 보장 안됨	수출보험 가입	안전함	품질조건을 확실히 합의
CAD	수출대금 영수가 보장 안됨	수출보험 가입	선적은 확인되지만 품질 확인은 불가능	선적전 검사 혹은 소량수입
O/A	대금영수 및 상품 회수가 보장 안됨	수출보험 가입	가장 유리한 거래	제품 도착시 즉시 검사, 통보
D/P	대금영수가 보장 안됨	수출보험 가입	선적은 확인되지만 품질 확인은 불가능	선적전 검사 혹은 소량수입
D/A	대금영수 및 상품 회수가 보장 안됨	수출보험 가입	유리한 거래이지만 만기일에 지급을 하지 않으면 거래 은행에게 신용을 잃음	제품 도착시 즉시 검사, 통보
L/C	대금영수가 확실	수출보험 가입 UCP와 ISBP 규정에 따른 완벽한 서류작성	제품의 품질을 보장 받을 수 없음	선적전 검사 (PSI) FAC

※ PSI(Pre Shipment Inspection): 수입상이 품질을 보장 받기 위한 방법은 수출상이 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제품을 직접 검사하는 방법

※ 수입보험 : 수입보험은 수출용 원자재나 완제품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국내용인 경우, 광물인 경우에만 가입대상이 된다.

※ FAC : “Final Acceptance Certificate”의 약어로써 개설의뢰인이 최종적으로 받아 들이겠다는 확인서이다. 개설의뢰인(수입자)이 신용장 개설신청시 신용장에 요구서류로써 삽입해 둔다.

+ 20% is payable against applicant's FAC

신용장 상에 일부 대금을 일정 기간 후(예 : 제품 검사를 완료 한 후)에 지급하겠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개설의뢰인이 발행한 ‘FAC’를 첨부하면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개설의뢰인에게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으나 수익자에게는 독소조항이 된다.